

한편 '업소'에 공보 할 것.

업무 직업인정업무 차익요강 개정 1부.

수신기: 1-12, 1-3

직업인정소 (중기문, 남기문, 건통도 부네)

(23인)

수신기 직업보실장

직업 시보 제정 인력

직업인정소 제215호 직업인정업무 차익요강을 발췌한 것이 업무 직업
인정기 등본인도 시보인 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시보 시정유 제215호 직업인정업무 차익요강 개정안 1부 끝

8-2

예규 제 315호 개정 개요

가. 개정 사유

노동청 직안 1456-2810 (76.2.20) 호에 의함

나. 개정 골자

1. 본 예규 제 7조 3항 3호를 일부개정
2. 본 예규 제 7조 3항 5호 및 6호를 신설

서울특별시 직업안정업무처리요강개정령

^{요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26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예 주 안

서울특별시 예주제 호

9
양영환
장 최

서울특별시 직업안정 업무처리 요강중 개정요강

서울특별시 직업안정 업무처리 요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4호
다음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5.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6. 호적 등본 또는 초본

부 칙

(시행일) 이 요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 (안)	비고
<p>제7조 (직업안내소의 취업 알선)</p> <p>③ 2종 직업안내소장은 구인, 구직, 취업을 알선할 때에는 다음 각호중 1호 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 치하여야 한다</p> <p>1. 주민등록증 내용 기재 (본적, 주소, 성명, 생년 월일, 번호, 발행처 등)</p> <p>2. 노동청장이 발행하는 기능사 수첩 사본</p>	<p>제7조 (직업안내소의 취업 알선)</p> <p>③ 2종 직업안내소장은 구인, 구직, 취업을 알선할 때에는 다음 각호중 1호 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 치하여야 한다</p> <p>1. 주민등록증 내용 기재 (본적, 주소, 성명, 생년 월일, 번호, 발생처 등)</p> <p>2. 노동청장이 발행하는 기능사 수첩 사본</p>	<p>노동청 직 안 1456- 2810 (76 2.20) 에 의거</p>

현행	개정 (안)	비고
<p>3. 신원증명서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 첨부)</p> <p>4. 영업감찰 사본</p> <p>5. 신설</p> <p>6. 신설</p>	<p>3. <u>신원보증서</u>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 또는 <u>주민등록 등·초본 첨부</u>)</p> <p>4. 영업감찰 사본</p> <p>5. <u>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u></p> <p>6. <u>호적 등본 또는 초본</u></p>	<p>183</p>

직안 1456 - 5, f/c

63-8223

1976. 2. 20.

수신 서울특별시청

참조 기획국장

제목 취업안정업무 처리 요강 개정

Handwritten signature and stamp area.

1. 사학 1456 - 751(76. 2. 11)와 관련입니다.

2. 각 시의 취업안정 업무처리 요강(이규 제3/5호)을 검토한바 동
요강 제7조를

가.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본

나. 호외등본 또는 호본을 소지한 구직자의 취업안정 기의 부여
사항이 누락되었으니 추가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조 제3항 제3호의 신원증명서는 신원보증서(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부등본)로 대체 시행모양 하시기 바랍니다. 끝.

23

비밀보통서	공	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안정업무	장	부	하	위	진행